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160호

지침의 근거 법령인 「항만법」 및 「항만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「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.

2020년 09월 22일  
해양수산부장관

###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개정

지침의 근거 법령인 「항만법」 및 「항만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, 「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
1. 건 명 :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

2. 구 분 : 개정

3. 주요 내용

- 항만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변경사항 반영
  - 항만법 상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근거조항의 변경사항 반영(제1조, 제4조, 제6조)
  - 항만법 상 권한의 위임 근거조항의 변경사항 반영(제34조)
  - 항만법시행령 상 규정된 항만시설물 근거조항의 변경사항 반영(제2조, 제4조, 제11조)

5. 관련단체 : 한국항만협회

(☎ 02-2165-0138, <http://www.koreaports.or.kr>)

※ 「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(☎ 044-200-5955, 5956) 또는 한국항만협회(☎ 02-2165-013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([www.mof.go.kr](http://www.mof.go.kr))와 한국항만협회([www.koreaports.or.kr](http://www.koreaports.or.kr))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